

「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생활임금 적용대상(안 제3조)
- 생활임금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9조)
-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및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최저임금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, 이를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향후 생활임금을 적절히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「최저임금법」 등 상위 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.
-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, 시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, 공공근로 등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등은 적용 제외대상으로 두고 있음.
- ‘생활임금’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,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고는 하지만, 구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생활임금이 적용됨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임.
- 또한,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, 적용 대상 등을 심의할 때, 면밀한 심의를 통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.